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84
----------	------

제안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제안자 : 김성배 의원 외 4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7935호, 2006.4.28 공포)되고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2005.12.29 공포)으로 의원정수가 조정됨(17인→11인, 6인 감소)에 따라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8인→5인)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법 개정으로 조례명을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글 맞춤법에 따라 변경함
- 각 상임위원회 정수 “8인”을 각각 “5인”으로 조정(안 제2조)
-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조정(안 제3조·제7조)
- 특별위원회 정수 “8명”을 “5인”으로 조정(안 제8조제2항)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 지방자치법 제50조의2
- 지방자치법 제54조
-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4. 예산수반 사항 : 없음

5.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로 한다.

제2조제1호중 “8인”을 “5인”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8인”을 “5인”으로, 동조제3호중 “8인”을 “5인”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라목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7조제2항중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2항중 “8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5인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위원회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u> (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방자치법</u> 」 ----- ----- <u>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u> ----- -----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정수에 있어 원 구성후 결원이 발생한 위원회는 보궐선거로 충원이 있기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 ----- ----- ----- ----- ----- -----		
1. 운 영 위 원 회 : <u>8인</u>		1. ----- : <u>5인</u>		
2. 시민행정위원회 : <u>8인</u>		2. ----- : <u>5인</u>		
3. 재무건설위원회 : <u>8인</u>		3. ----- : <u>5인</u>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1. 운영위원회		1. -----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가. -----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 -----		
라. 제7조제2항의 <u>징계자격특별위원회</u> 에서 심사하지 아니하는 의원신분에 관한 사항		라. ----- <u>윤리특별위원회</u> ----- -----		

현행	개정안
2.~3. (생략) ③(생략)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각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단서신설〉	2.~3. (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 <u>다만, 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u>
②(생략)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생략) ②의회는 의원의 <u>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u>를 둔다.	②(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u>윤리심사 및 징계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u>-----.
③~④(생략)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 ①(생략) ②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u>8명을 초과할 수 없다.</u>	③~④(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 ①(현행과 같음) ②----- <u>5인으로 한다.</u>
제12조(부위원장) ①~②(생략)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신설〉	제12조(부위원장) ①~②(현행과 같음) ③-----. <u>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u>